

● 북제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

북제주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

북제주군 조례 제795호

북제주군 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984년 5월 28일

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.

1. 단독주택(공관을 제외한다), 공동주택, 기숙사
2. 종교시설
3. 격리병원
4. 교육연구시설(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)
5. 시장
6. 위락시설
7. 관람장
8. 공장
9. 창고시설
10.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를 제외한다)
11. 자동차 관련시설
12. 동물 관련시설
13. 쓰레기 오물처리장
14. 교정시설

제 3 장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
제 9 조(지구의 세분)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.

1. 제 1 종 미관지구 :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
2. 제 2 종 미관지구 : 상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
3. 제 3 종 미관지구 :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

제29조(조경시설물의 설치) 군수는 식수부적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대신에 영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, 조각돌, 조원석, 분수대 및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.

제13장 온돌의 시공

제39조(온돌의 시공방법) 구멍탄 온돌을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“별표 1”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.

제39조의 2(온돌의 시공) 온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온돌공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

제17조(부속건축물의 부속)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18조(건축물의 모양)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, 담장, 대문의 양식, 구조,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 5 장 업무지구안의 건축제한

제21조(용도 제한) 업무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

한발양보 거리질서 한발빠른 선진조국